

-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審 査 報 告 書

2005. 4. 26.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 경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05년 4월 12일

상정일자 :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5. 4. 21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제안 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됨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인하하며,

○ 공동시설세의 납기를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추어 조정하고, 종합토지세 세목의 폐지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과징수 근거를 삭제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 상속 및 무상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29조)
-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과세표준액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을 단계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액별 최소 1,000분의 0.1에서 최대 1,000분의 0.3을 인하함(안 제59조)
- 공동시설세의 납기를 주택의 건축물·선박에 대한 세액과 주택의 건축물분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나머지 주택의 건축물분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조정함(안 제60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 근거를 삭제함(안 제77조 내지 제79조)

## 3. 검토보고 요지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

- 본 조례안은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등 지방세법 개정예 따라 부동산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됨으로써 세부담이 늘어나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이 현행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며,

- 공동시설세는 과세표준액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을 단계별 상향 조정하되, 서울은 1,000분의 0.1에서 1,000분의 0.3을 인하하는 한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세액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납기에 맞춰 7월(7.16-31)과 9월(9.16-30) 2회 납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 근거는 삭제됩니다.

####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방세법 개정과 연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조치로 여겨집니다.
- 다만 주택가격공시제 도입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즉 종전과 대비한 세수변동예상액, 그리고 도민이 체감하는 세부담정도는 어느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공동시설세의 경우 매년 7월에 부과되어 왔으나, 올해부터 변경된 납기에 맞춰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게 되면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검토됩니다.
- 특히 주택의 건축물분 납세자들은 1회차 납부만으로 “납부가 끝났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2회차 고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내지 이중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주민홍보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세조례”를 “충청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

제11조중 제7조의2제2호를 제6조의2제2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건물 및 선박”을 “주택외의 건축물 및 선박”으로,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를 “시가표  
준액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중 “1,000분의 30”을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저작권등록 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조에서  
“저작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저작권 등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제3항, 제73조 및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  
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23,000원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중 상속외의 등  
록

매 1건당 11,500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제53조제1항중 “건축물”을 “건축물(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로 한다.

제5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과세표준 및 세율)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공동시설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법 제180조제3호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제외한다)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주택의 건축물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6조를 제77조로 제77조(종전의 제76조)중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를 “담배소비세”로 하고, 제77조를 제78조로 하며, 제78조(종전의 제77조) 제1항중 제6호를 삭제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부과대상 지역)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한다.

제78조를 제79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b>제7조의2제2호</b>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천원 이하인 도세를 말한다.</p>	<p>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  <b>제6조의2제2호</b>-----  -----  -----  -----.</p>
<p>제22조(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의 결정 기준일 등)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p> <p>②<b>건물 및 선박</b>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b>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b> 다만,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이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p>	<p>제22조(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의 결정 기준일 등) ①-----  -----  -----.</p> <p>②<b>주택외의 건축물 및 선박</b>-----  -----<b>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b> -----  -----  -----  -----.</p>
<p>제29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생략)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가.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10  나. 기타 -부동산가액의 <b>1,000분의30</b>  4.~8. (생략)  ②~④ (생략)</p>	<p>제29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현행과 같음)  1.~2. (생략)  3. -----  -----  가. -----  나. ----- <b>1,000분의20</b>  4.~8.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42조(저작권등록 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li> <li>2. 저작권법 제52조, 제 60조제 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매 1건당 23,000원</li> <li>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li> </ol>	<p>제42조(저작권등록 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조에서 "저작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작권 등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li> <li>2.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제3항 제73조 및 제7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23,000원</li> <li>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li> <li>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li> </ol>
<p>제53조(납세의무자) ①공동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0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법 제180조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소유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p>	<p>제53조(납세의무자) ①----- ----- -----건축물(법 제180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p> <p>② (생략)</p>	<p>-----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9조(과세표준 및 세율)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p>5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1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2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3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2  5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4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6</p> <p>2. (생략)</p>	<p>제59조(과세표준 및 세율)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p>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p> <p>2. (현행과 같음)</p>
<p>제6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p> <p>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p>	<p>제6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공동시설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건축물(법 제180조제3호의 주택의</p>



현 행	개 정 안																		
<p><b>제7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b>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83 577 766 824"> <thead> <tr> <th>구분</th> <th>과세표준</th> <th>표준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5</td> <td>( 생 략 )</td> <td>( 생 략 )</td> </tr> <tr> <td>6</td> <td><del>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 토지세액</del></td> <td><u>100분의 20</u></td> </tr> </tbody> </table> <p>② (생 략)</p>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5	( 생 략 )	( 생 략 )	6	<del>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 토지세액</del>	<u>100분의 20</u>	<p><b>제78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b>----- ----- ----- -----.</p> <table border="1" data-bbox="821 577 1417 824"> <thead> <tr> <th>구분</th> <th>과세표준</th> <th>표준세율</th> </tr> </thead> <tbody> <tr> <td><del>(현행과 같음)</del></td> <td>( 현행과 같음 )</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del>(삭제)</del></td> <td>(삭제)</td> <td>(삭제)</td> </tr> </tbody> </table> <p>② (현행과 같음)</p>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del>(현행과 같음)</del>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del>(삭제)</del>	(삭제)	(삭제)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5	( 생 략 )	( 생 략 )																	
6	<del>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 토지세액</del>	<u>100분의 20</u>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del>(현행과 같음)</del>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del>(삭제)</del>	(삭제)	(삭제)																	
<p><b>제78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b> ( 생 략 )</p> <p>②시장(군수)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 재산세 · <u>자동차세 및 종합 토지세</u>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 한다.</p>	<p><b>제79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b> ( 현행과 같음 )</p> <p>②----- -----<u>자동차세</u>----- ----- -----.</p>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2) 기 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43조(저작권 등록 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조에서 “저작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저작권 등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 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23,000원
- 2의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3. 제1호 및 제2호의2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제242조(재산세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8조(부과징수) ①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60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10분의 2도 한다.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 징수한다.

##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1월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 (이하 생략)

##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